建築士業務의 当面問題

姜 奉 辰

建築士가 行하는 業務의 內容은 建築士法 第19條에,「建築士는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에 關한 業務」와,「建築物의 調査 또는 鑑定에 關한 業務」및「建築에 關한 節次履行代理業務」등을 行 할수 있도록 明確하게 規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法令上의 用語定義面에서 볼때는, 建築士業務에 對한 槪念과 範圍가 뚜렷 하게 規定 되어 있으므로, 建築士가 業務를 遂行 하는데 있어, 別다른 問題가 있을 것 같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建築士業務만큼 여러가지 複雜한 問題가 많은 業種도 드물 것이다.

그것은 本來 建築이란 그 自體가, 衣食住란 人間生活의 三大要素의 하나일뿐 아니라, 經濟性을 隨伴하는, 人間生活에 直結되는 많은 利害行爲의 하나이기 때문에, 恒常 많은 問題點들이 惹起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果然 建築士가 業務를 遂行하는데 있어, 어떠한 問題點들이 있는가를 간추려 보건데는, 大槪 이를 세가지 類形으로 分類 할수 있다.

그 하나는「協会発足当時의 草創期부터 오늘까지 累積되어 온 問題」로서, 아직까지 完全한 解決을 보지 못한 것으로, 例를 들면,「建築士報酬基準 現実化 問題」,「所得標準率引下問題」,「二重職, 名儀貸与根絶에 関한 問題」,「設計費의 Dumping防止에 関한 問題」,「工事監理上 責任限界에 関한 問題」,「設計用役 入札参加禁止에 関한 問題」等等을 들수 있고,

둘째는,「現時点에 当面한 問題」로서, 時急히 解決되어야 할 것으로, 例를 들면,「建築物의 建築抑制措置 解除에 關한 問題」,「建築審議制度 改善에 關한 問題」等을 들수 있고,

셋째로,「將來發生이 豫想되는 問題」로서, 미리 이에 對한 對備策을 講求 해야 할 것으로, 例를 들면,「図書申告制의 廢止 또는 事後申告로 變更하는 問題」,「大學教授는 學問研究上 建築設計業務를 可能토록 해야 한다라는 問題」,「Engineering 會社에서 建築士를 雇傭 하면 모든 建築設計를 可能토록 하는 問題」等을 豫見 할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問題들은 建築士들에게는 直接 皮膚로 느낄수 있는 問題로서, 早速하고 円滿하게 解決 될것이 바람직 한 일 이지만, 建築士 個個人이 解決 해 나가기란 거의 不可能한 問題들 이기 때문에, 建築士協會가 主動 해서, 事案의 緩急을 가려, 急한 當面問題부터 하나씩 解決 해 나갈수 밖에 없는 일이다.

이러한 어려운 問題들을 總網羅해서, 그 本質을 究明하고, 이에 對한 対策을 講求한 다는 것은 至難工事이기 때문에, 筆者는 다만 上記 例示한 問題點들中에서 몇가지만 들어, 所信을 披瀝해 보고저 한다.

"建築物의 建築抑制措置解除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建築資材 特히 鉄筋과 시멘트의 物動計劃의 差跌로 因하여, 政府当局에서 建築抑制措置를 取한 일은 過去에도 例가 없는 일은 아니었다.

建設部에서는, 經濟長官會議決定事項으로, 지난해 5月 22日, 建築物의 建築抑制措置를 發表한 以來, 오늘날까지 継続 建築을 規制하고 있으며, 紙上報導에 따르면, 今年 下半期에나 解除할 方針 이라고 한다.

도리켜 보건데, 2次經濟開発 5個年計劃期間中인 1967年부터 1971年까지 사이에, 우리나라 建築界는, 大単位高層建物과 多様化한 各種建築物의 建築이, 史上 類例없는 好況속에, 一大建築Boom이 일어나, 鉄筋을 비롯한 시멘트 其他 重要原資材의 供給이 需要를 따르지 못 하여, 価格이 昂騰하고 資材의 求得이 困難해지자, 經濟企劃院에서는, 2次経済開発計劃事業과 官需用建築物의 計劃推進에 差跌이 올것을 憂慮하고, 1969年度에 서울地域에 限해서 不要不急 하고 奢侈性을 띤 民需用 建築物 抑制를 発表해서 建築界에 큰 衝撃을 준 일이 있었는바 이것이 建築抑制措置를 取한 嚆失이다.

그러나 이 措置는 法的根據가 없는 行政措置란 点을 들어, 当時 建築士協会가 対政府折衷을 벌인 結果 얼마안가서 有耶無耶로 끝난 일이 있었다.

그 後, 3次経済開発5個年計劃期間中인 1975年度에는, 継続的인 建築Boom으로, 建築資材代의 昂騰이 모든 物価上昇의 要因이 된다고 判断하여, 政府에서는 서울, 釜山, 大邱, 光州等 大都市에 物価抑制策의 하나로, 高層

建物과 奢侈性建物및 不要不急한 民間建築物의 建築을 抑制措置 할 것 을 発表 하였다.

이번 措置는, 그동안 改正된 建築法 第44條②項에 根據를 둔 抑制措置이었기 때문에, 相当期間 継続된 結果, 社会全般에 걸쳐 景気가 沈滞되여, 社会的으로 與論이 沸騰해지자 政府에서는 "景気의 浮揚"이란 名分으로 이를 解除 한바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建築抑制가 解除되면서부터는 民間建築活動이 活潑하게 再開 되었으며 所謂 "Apart"景気가 일어나 機投Boom이 京鄕各地에 蔓延되어 住宅建設業者들은Apart 建設에 熱을 올리는데 餘念이 없는 데다가 政府에서 推進하는 農村住宅改良事業및 聚落構造改善事業과 雪上加霜으로 裡里災害復旧事業等이 겹쳐, Cement, 鉄筋, 内装材等 建設資材의 需要가 急増하여 絶対量이 不足함에 이르자, 1978年 5月22日에 建設部에서는「建築活動의 急激한 増加에 따른 資材의 需給不均衡을 予防하고자」라는 目的아래 全国的으로 70坪以上의 住宅과 国家, 地方自治団体의 庁舎는 勿論 大規模 民間建築物의 大部分을 抑制措置 한다고 発表 했다가 70坪 住宅은 上流層의 住宅에 該当할뿐 아니라 投機만을 助長하는 Apart를 抑制対象에서 除外 한것은 不合理 하다는 批判이 藉藉 하자 建設部에서는 6月26日字로 이를 是正発表 한바 있거니와 그修正된 内容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오늘 現在까지 施行되고 있는 것이다.

即 抑制措置의 目的을「建築活動의 急激한 増加에 따른 資材의 需給 不均衡을 予防하고 低所得層의 住宅과 工場建築에 必要한 資材를 于先 供給할수 있도록 하고자」로 変更하고 内容도 70坪以上住宅을 40坪以上住宅으로 面積을 낮추고, 새로 45坪以上의 Apart를 抑制対象建物에 넣기로 追加 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抑制措置로 말미암아 建築業者들은 対象建物은 勿論, 対象除外建物까지 建築을 保留하게 되어 近一年間 建築活動이 沈滞에 빠진 結果 建築士는 業務가 中断되어 休廃業하는 者가 続出하고 生業에 큰 威脅을 받게 되었다. 4月末現在의 統計에 依하면 서울市内 建築許可件数는 지난해 同期에 比해 48%로 激減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臨機応変的으로 抑制와 解除가 되풀이 되는 政策은 止揚하고 보다 根本的인 対策을 講求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為해서는 長期的인 眼目으로 物動需給計画을 正確하게 세워서, 이에따라 生産施設을 拡充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報導에 依하면 政府에서는 国内消費量을 確保하기 為해 Cement의 輸出을 全面禁止한 結果 現在 남아 돌아가는 状態라고 하므로, 建築士 協会는 関係当局과 折衷해서 하루라도 빨리 解除 하도록 努力 해야 할 것이다.

"建築審議制度 改善에 関한 問題에 対하여"

서울, 釜山, 大邱等 大都市에서는 建築法 第44條의 2의 規定에 依하여 都市美観을 為한 建築計画을 審査하기 為하여 建築委員会를 두고 있다.

建築委員会가 設置된 以来 数年동안, 建築士는 委員会가 決定 한대로 順応해 왔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建築士들의 不平不満도 大端했었다. 그 主된 理由를 보면, 図書審議에 있어 建築士의 作家的創作力이 軽視当하고 委員의 主観的 意見에 左右되여 設計図書의 修正変更과 返戻가 頻繁하다는 点과, 建築에 関한 法令에 合当하게 設計된 것이라도 随時로 変更되는 條例와 方針에 어긋난다는 理由로 返戻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審議用 提出図書의 種類와 数量이 過多하다는 点等으로 要約할 수 있다.

서울市의 경우는 提出書類의 種類가 14種이며, 提出図書数量은 16部를 提出하도록 되여 있어, 이를 作成하는데만 相当한 時間과 努力과 費用이 消費 되기 때문에, 建築士業務中에서 가장 큰 苦痛거리가 되어 있다.

이에 対한 対策으로서는,「審査対象建物의 範囲를 大幅縮少하고」,「審査基準을 法의 테두리内에서 定하도록하며」,「審査委員의 数를 5人～7人程度로 減縮하고」,「提出図書의 種類도 最少限으로 줄이고」,「提出図書의 数量도 3部程度로 줄이도록」하는 方向으로, 建築法 施行令에 明文化 하도록 改正을 推進 하는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建築士報酬基準 現実化問題에 対하여"

現在 使用되고 있는 報酬基準은 設計監理料率表로 되여 設計費와 監理費가 한가지로 묶여 있고, 設計費와 監理費의 比率은 7：3으로 되여 있어 監理費는 設計費의 30% 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무 低廉하여 完全한 監理業務를 遂行하기 困難했으며 이것이 不実監理의 素因이 되어 왔었다. 그러므로 設計費와 監理費는 料率이 分離되어야 하며, 監理料率은 最少限度 設計料率의 80%以上으로 策定되어야 하고 이렇게 改正 하므로써 従来의 監理抛棄나 忌避性向에서 벗어나 名実兼全한 工事監理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料率表의 種別도 5種에서 7種으로 늘려야하며 建築物의 種類도 더좀 細分化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種別配定도 合理的으로 再調整 되어야 할 것이다.

実積会費算出基準表는 設計費Dumping의 要因이 되었고 現実工事費와 너무나 큰 差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改正해야 할 것이다.

"所得標準率引下問題에 対하여"

所得標準率이란 税務当局에서 無記帳者에 対하여 推計

課税 할 경우에 総収入 金額에서 必要経費를 뺀 것을 所得金額으로 하여 이를 総収入金額에 対한 百分率로 나타내는 것으로 現在 建築士業에 対한 所得標準率은 27% 이다.

이 所得標準率은 建築士協会創立当時에 比하면 많이 引下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実地所得에 比하여 過大 한 것이다. 過去에는 税務当局에서 認識하기를 建築士業이란 鉛筆과 종이만 있으면 다 되는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協会創立当時의 所得標準率은 無慮 52%나 되었던 것을 建築士協会가 税務当局에 꾸준히 説得한 結果 52→47%→42 →37%→34%等과 같이 段階的으로 引下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建築士業務에 있어 主要한 経費를 들어 보면, 測量費, 地質検査費, 構造計算費, 電気, 衛生, 暖房, 冷房, 空気調和設備等의 設備設計費, 透視図製作費, 模型製作費等의 外注用役費와 人件費, 事務室賃借料 및 其他 経営費等 莫大한 経費가 所要되는 까닭에 所得標準率은 18%程도 引下 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技術業務이면서도 科技処에 登録된 技術用役業体의 所得標準率이 20%인 것에 比하면 建築士에 対한 所得標準率은 마땅히 引下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建築士는 可能限 誠実히 税務会計에 맞도록 記帳을 해서 推計課税를 当하지 말고 根拠課税로 実査를 받도록 各自가 努力 하는것 만이 最上의 方法일 것이다.

"二重職, 名儀貸与 根絶에 関한 問題에 対하여"

建築士業務中에서 恒常 物議를 일으키면서도 完全히 一掃되지 못 하고 있는 問題中의 하나이다.

그 理由는 陰性的이고 知能的이며 建築士가 陰으로 陽으로 介在 되어 있기 때문이다.

二重職이란 職場에 勤務하면서 建築士 事務所를 하는 者를 말 하며 過去에는 相当히 많았으나 요즘에는 많이 陶太 되었다. 그 代身 巧妙한 方法으로 이루어지는 名儀貸与는 아직까지 行해지고 있으며 그 類形도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形態가 있다. 即,

1. 職場에 勤務하고 있는者가 맡아서 行한 設計를 謝礼金을 받고 建築士自身이 設計한것 처럼 偽装하여 図書申告를 하는 名儀貸与行為.

2. 職場에 勤務하는者가 謝礼金을 받고 無免許者에 事務所를 経営하도록 名儀를 貸与해주는 行為.

3. "Engineering"이나 財閥級大会社를 設置場所로 하여 事務所開設登録을 하고 俸給을 받으면서 所属된 会社業務에 属한 設計를 한것을 建築士自身의 業務로 한것처럼 偽装하여 図書申告를 하는 名儀貸与行為.

4. 建築士가 資本主에 雇傭当하여 資本主가 設置한 事務所에서 月給을 받으면서 建築士自身이 直営한것 처럼 偽装하고 図書申告를 하는 名儀貸与行為.

5. 従前의 規定에 依한 2級建築士가 業務限界範囲를 超過해서 行한 設計를 謝礼金을 받고 建築士自身이 한것처럼 図書申告를 하는 名儀貸与行為.

6. 単独事務所開設建築士가 合同事務所가 아니면 할 수없는 設計를 行한 것을 謝礼金을 받고 合同事務所에서 한것처럼 偽装하여 図書申告를 하는 名儀貸与行為.

위와 같이 여러가지 形態로 巧妙하게 法網을 避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名儀貸与行為는 建築士業務의 癌的存在이며 建築士의 差恥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対한 対策으로서는 오로지 建築士 自身의 良識과 人格 그리고 尊法精神에 달려 있거니와 어디까지나 違法行為에는 틀림 없으니 만큼 建築士가 相互監視摘発하여 建築士協会나 関係当局에 告発 할 수 밖에 別다른 道理는 없을 것이다.

위의 論及한 몇가지 問題点 外에도 여러가지 問題가 남아 있으나 紙面関係로 더 以上 穿鑿할것을 省略 하거니와 앞으로 発生 될 可能性을 排除할수 없는 問題로서 前記한 「図書申告制의 廃止」또는 「事前申告를 事後申告로 変更」하는 問題라든가 「大学教授는 学問研究上 建築設計業務를 可能토록해야 한다」라든가 하는 問題는 充分히 出現될것이 予想 된다.

왜냐 하면 図書申告制는 法理論上으로는 論理에 窮하는 바가 없지 않고 오로지 建築士協会에만 有利한 規定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또 「大学教授의 設計可能性」与否問題에 対하여도 過去에 文教部長官 某氏는 文教部 所管 建築設計는 可及的 大学教授에 委嘱토록 하라는 指示를 部内関係公務員에게 내린 일이 있었을뿐 아니라, 日本에서는 大学教授들이 「建築設計実務를 하지않고서는 学生들에게 完全한 教育을 시킬수 없으며, 日進月歩하는 建築工学을 実務面에 応用한다는 것은 学問研究上 絶対必要하다」라고 主張하기도 한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問題가 発生될것에 対備해서 建築士協会는 미리미리 研究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国宝建設団 代表